

성결대학교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본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7. 지자체 산하기관의 수탁운영 업무
8. 산학협력 정부지원 사업
9.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10. 기타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법령과 본 대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사항 및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3조 (단장의 자격)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성결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통괄한다.

제4조 (사무분장) 산학협력단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성결대학교산학협력단 운영 규정(9-1-2)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은 직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 단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본부장 또는 과장으로 하되 본부장 또는 과장이 공석일 경우,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한다.

제6조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심의 건의한다.

1. 연구과제 및 지원사업 등의 협약(계약) 증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산학연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계약)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섭외 활동
3. 산학협력단 산하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심의
4. 산학협력단 예·결산 결의 및 추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

제8조 (운영)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기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개회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0조 (보고) 예·결산 및 정관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11조 (재산 및 회계) 산학협력단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정관 제3장”에 의한다.

성결대학교산학협력단 운영 규정(9-1-2)

제 5 장 보 상 금

제12조 (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6 장 보 칙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